

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
운용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‘고향사랑기부제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2조)
-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공급업체의 공모·선정 및 공급비용의 지급 (안 제5조, 제6조)
-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근거(안 제7)

- 고향사랑기금의 설치, 재원,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8조 ~ 제10조)
-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20조)
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(안 제21조, 제22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정하는 것임.
-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·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,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,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음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4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)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(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)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선정 시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 공고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는 “고향사랑 기부금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” 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지정한 금고에 예치·관리 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10조(기금운용관)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 지정과 기금 관리 대장 비치 및 증빙서류 관리를 규정함.
- 안 제11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)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.
- 안 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·변경,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 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·운용 심의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~ 안 제20조(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과 임기(연임 포함)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간사와 간사의 사무,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21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와 안 제22조(기금의 결산)는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결산보고서에 포함될 첨부서류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.
-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추진 가능한 준비행위의 종류와 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의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.
- 조례의 시행 초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,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됨으로,

시행일 전이라도 부칙 제 2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조사와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모금된 기금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가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와 미담 사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됨.
-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상기 적시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. 끝.